

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의 금전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, 소관부처 변경,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(안 제11조)
- 나. “국토해양부장관”,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”, “국토교통부”로 각각 명칭 변경(안 제6조, 제18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, 용어 등 변경
- 라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정비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- 라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 첨부

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**정의는**”을 “**뜻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**국민주택건설사업**”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.
2. “**주택사업**”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.
3. “**기초생활수급자**”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**위하여 시**”를 “**위하여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**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**주택사업 특별회계**”를 “**특별회계**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융자금의 이율**”을 “**융자금 이자율**”로, “**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“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”**”을 “**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「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」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[별지서식]**”를 “**경우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**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**이율**”을 “**이자율**”로, “**연체이율**”을 “**연체 이자율**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**동법**”을 “**같은 법**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**자가**”를 “**사람이**”로, “**의해**”를 “**따른**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시장은 다음 각호의 1**”을 “**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**”로, “**받은 자**”를 “**받은 사람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**사용한 때**”를 “**사용한 경우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**의한**”을 “**따른**”으로, “**아니한 때**”를 “**아니한 경우**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**저소득층 전세금융자지원사업**”을 “**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**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
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자로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**제14조제1항 및 제2항**”을 “**제14조제1항**”으로, “**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**”를 “**사람은 제외한다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**자는 중복해서 지원할**”을 “**사람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**”로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구미시 관내에 소재하여야”를 “시에 위치하여야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, “이율”을 “이자율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구미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를 최우선순위”를 “시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최우선 순위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제외되었을 때”를 “제외되었을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 는 다음과 같다. <u><신 설></u>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
<u><신 설></u>	1. “국민주택건설사업”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2. “주택사업”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3. “기초생활수급자”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제3조(특별회계 설치) 주택사업과 전세금지원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	제3조(특별회계 설치) ----- ----- ----- -- 위하여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 -----.
제4조(주택금고 설치) <u>주택사업</u>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(우리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농업협동조합중앙회)본 ·	제4조(주택금고 설치) <u>특별회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융자조건)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「주택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“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”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[별지서식]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할부금 등 상환) ① (생략)

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이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.

제6조(융자조건) ① -----
----- 융자금 이자율 -----
----- 따라
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「국
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」
-----.

② -----
----- 경우에는 개인별로 별지
서식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할부금 등 상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이자율-----

제10조(관리비) 공동주택과 부대
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
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「주택
법 시행령」 및 동법 시행규칙이
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보험가입) 국민주택의 입
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
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
한다.

제12조(준용규정) ① (생략)

②용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
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
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
있다.

제13조(자금의 반환) 시장은 다음
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용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
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
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
명할 수 있다.

연체 이자율-----.

제10조(관리비) -----

----- 같은
법 -----
-----.

<삭 제>

제12조(준용규정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 사람이 --

- 따른 -----
-----.

제13조(자금의 반환) 구미시장(이
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-- 받은 사람--

-----.

1.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
사용한 때

2.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
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
한 때

제3장 저소득층

전세금융자지원사업

제14조(지원대상) ① 기초생활수
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.

②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
로 하며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
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
고 있는 자로 한다.

③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
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
융자금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
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
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

1. -----
----- 사용한 경우

2. -----
- 따른 -----
----- 아니한 경우

제3장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

지원사업

제14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은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
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

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
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중 무주택자로 시에 주소를
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
하고 있는 사람

<삭 제>

② 제14조제1항-----

수도 있다.

④ 국민주택기금이나 시 자체사업에 의해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관련 자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.

제15조(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)
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건축물 관리대상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한다. 다만, 기숙사, 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.

제16조(지원금액 등) ① (생략)

②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택소유자(등기부상 소유자)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8조(이자율 변경) 이자율은 국
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저소득

--- 사람은 제외한다.

③ -----

----- 사람은 중복해서
지원 받을 수.

제15조(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)

시에 위치하여야

제16조(지원금액 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시 장 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이자율 변경) -----
- 국토교통부 -----

가구 전세자금 변동 이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9조(신청) 전세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0조(대상자 선정기준) ① (생략)
②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구미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세대원수가 많은 자를 그 다음 순위로 한다.

제21조(지원금 회수) ① (생략)
② 전세금 지원 대상자가 관할 구역 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을 때

----- 이자율-----
-----.

제19조(신청) -----
----- 사람은 -----

----- 따라-----
-----.

제20조(대상자 선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시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최우선 순위-----

-----.

제21조(지원금 회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----- 제외되었을 경우

관계법령

□ 「주택법」

제2조(정의) 1. ~ 2. (생략)

3. "국민주택"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(이하 "주거전용면적"이라 한다)이 1호(戶)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 이하 "국민주택규모"라 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62조(국민주택기금의 운용·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)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(이하 "기금수탁자"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⑦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·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국가재정법」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3.]

제62조 삭제 <2015.1.6.>

[시행일 : 2015.7.1.] 제62조

제73조(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1.3.31.>

1. 자체 부담금
 2.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
 3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
 4. 농협은행로부터의 차입금
 5.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
 6.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
 7.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·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
 8.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
-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3.23.>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소과 실·과		건 축 과
입 안 자	담 당 관	조 문 배
	담 당	장 재 덕
	담 당 자	최 채 진 (480-5527)